

『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8년 10월 1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시민의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 이용 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전문체육선수의 경기연습, 개인연습,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을 신설함(안 제4조제1항제5호)

나.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시체육회, 시장장애인체육회, 각 군·구 체육회, 각 군·구 장애인체육회 소속 동호인의 경기연습, 개인연습,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을 신설함(안 제4조제1항제6호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**2018년 10월 10일(수)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, 팩스 또는 e-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24, 팩스 032-440-8764, 이메일 xebius94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			
○성 명 :			
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사항

○ 신구조문 대비표.(붙임1)

○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(붙임2)

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,
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전문체육선수의 경기
연습, 개인연습,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

6. 시체육회, 시장장애인체육회, 각 군·구 체육회, 각 군·구 장애인체육
회 소속 동호인의 경기연습, 개인연습,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

제4조제1항제7호(중전의 제5호) 중 “각 군·구 체육회, 직장”을 “직장”으
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붙임 1】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 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.	제4조 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①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5. 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·중 학교·고등학교 전문체육선수 의 경기연습, 개인연습, 체력 단련 등의 체육활동
<신설>	6. 시체육회, 시장애인체육회, 각 군·구 체육회, 각 군·구 장애인체육회 소속 동호인의 경기연습, 개인연습,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
5. 각 군·구 체육회,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 육활동 및 행사	7. 직장 ----- ----- -----
6. ~ 8. (생략)	8. ~ 10. (현행 제6호부터 제8 호까지와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【붙임 2】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해당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.

3. 미첨부 사유

- 시립체육시설 이용 시 2인 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,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원활한 시설 이용 및 체육활동 참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-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백완근